

1

외환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환거래법령 개정 (업무계획 10p)

(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유예림 사무관, 044-215-4751)

1] 추진 배경

- 그간의 외환 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**현행 외환제도는 대내외 여건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 상황**

⇒ **외환거래 편의 제고 및 소액 해외송금업 도입 등 외환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환거래법령 개정 추진**

2] 주요 내용

①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

- 외환거래시 **은행의 확인의무와 고객의 신고의무를 완화**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- **대외채권 회수의무를 상시적 의무에서 외환위기 상황 등 비상시에 발동** 할 수 있는 **세이프가드 조치로 전환**

②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게 소액 해외송금업 허용

③ 자율성 제고에 상응하는 대응수단 마련

- **외환시장 교란행위** 등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에게 **건전한 질서 유지 의무를 부과**
- **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의 일시적 하향조정** 근거 마련

3] 향후 계획

- **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**이 작년말 국회 본회의('16.12.29일)에서 의결되어 '17.7월 시행 예정

⇒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**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 추진** ('17.7월까지)